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시설내역 및 인원	시설의 소재지		
	시설 면적 (㎡)		
	인원 정비기술자 : 명, 작업원 : 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명세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정비기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정비시설 등의 기준

-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 시험장, 부품 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원: 팽창식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와,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을 각각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